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0월 20일
전문위원 권 오 숙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9월 26일

나. 발 의 자: 정정희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 10. 20.)

2. 제안설명 요지

제안이유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의 2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○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0. 12.) 결과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조례에 명문화 규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결산, 기금운용계획등을 심사하고 있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2)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
-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조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고,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